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2016년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요금을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5% 인상하였으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 나. 안정적 재원 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수도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 요금 추가 인상

- 당초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5% 인상
- 개정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5% 추가 인상(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안 별표 2, 별표 4)
-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원/m³당)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수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2019. 3. 13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침

(2)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 관련 별표 2 및 제35조 관련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2019. 11월 고지분부터	2020. 11월 고지분부터	2021. 1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430	470	510
	21 ~ 30㎥ (2단계)	610	660	710
	31 ㎥ 이상 (3단계)	1,020	1,100	1,190
일반용	0 ~ 100㎥ (1단계)	710	770	830
	101 ~ 300㎥ (2단계)	980	1,060	1,140
	301 ~ 1,000㎥ (3단계)	1,120	1,210	1,310
	1,001 ~ 2,000㎥ (4단계)	1,320	1,420	1,530
	2,001㎥ 이상 (5단계)	1,460	1,570	1,690
욕탕용	0 ~ 1,000㎥ (1단계)	1,230	1,260	1,260
	1,001 ~ 1,500㎥ (2단계)	1,340	1,370	1,370
	1,501 ~ 2,000㎥ (3단계)	1,490	1,520	1,520
	2,001㎥ 이상 (4단계)	1,550	1,590	1,590
전 용 공업용	계약㎥당	460	500	540
	초과㎥당	610	660	71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 금			비 고
	2019. 11월 고지분부터	2020. 11월 고지분부터	2021. 11월 고지분부터	
13 mm	1,310	1,410	1,520	
20 mm	3,640	3,920	4,220	
25 mm	5,830	6,270	6,750	
32 mm	10,370	11,150	11,990	
40 mm	17,480	18,800	20,210	
50 mm	26,790	28,800	30,960	
80 mm	74,600	80,200	86,220	
100 mm	110,900	119,220	128,170	
150 mm	241,420	259,530	279,000	
200 mm	343,230	368,980	396,660	
250 mm	463,240	497,990	535,340	
300 mm	557,660	599,490	644,460	
350 mm	690,420	742,210	797,880	
400 mm	763,460	820,720	882,280	
500 mm	982,530	1,056,220	1,135,440	
600 mm	1,593,340	1,712,850	1,841,320	
800 mm 이상	1,779,230	1,912,680	2,056,14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4항을 적용				

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조례 제29조 관련) (단위 : 원/㎥)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제29조 관련) (단위 : 원/㎥)				
업종별	단계별	요금		업종별	단계별	요금		
		'19년 11월 고지분부터	'20년 11월 고지분부터			'19년 11월 고지분부터	'20년 11월 고지분부터	'21년 1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400	410	가정용	0 ~ 20㎥ (1단계)	430	470	510
	21 ~ 30㎥ (2단계)	560	570		21 ~ 30㎥ (2단계)	610	660	710
	31 ㎥ 이상 (3단계)	940	960		31 ㎥ 이상 (3단계)	1,020	1,100	1,190
일반용	0 ~ 100㎥ (1단계)	660	680	일반용	0 ~ 100㎥ (1단계)	710	770	830
	101 ~ 300㎥ (2단계)	910	930		101 ~ 300㎥ (2단계)	980	1,060	1,140
	301 ~ 1,000㎥ (3단계)	1,040	1,070		301 ~ 1,000㎥ (3단계)	1,120	1,210	1,310
	1,001 ~ 2,000㎥ (4단계)	1,220	1,250		1,001 ~ 2,000㎥ (4단계)	1,320	1,420	1,530
	2,001㎥ 이상 (5단계)	1,350	1,380		2,001㎥ 이상 (5단계)	1,460	1,570	1,690
욕탕용	0 ~ 1,000㎥ (1단계)	1,230	1,260	욕탕용	0 ~ 1,000㎥ (1단계)	1,230	1,260	1,260
	1,001 ~ 1,500㎥ (2단계)	1,340	1,370		1,001 ~ 1,500㎥ (2단계)	1,340	1,370	1,370
	1,501 ~ 2,000㎥ (3단계)	1,490	1,520		1,501 ~ 2,000㎥ (3단계)	1,490	1,520	1,520
	2,001㎥ 이상 (4단계)	1,550	1,590		2,001㎥ 이상 (4단계)	1,550	1,590	1,590
전용 공업용	계약 ㎥ 당	420	430	전용 공업용	계약 ㎥ 당	460	500	540
	초과 ㎥ 당	560	570		초과 ㎥ 당	610	660	710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당 요금임.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 시설 훼손, 제39조의 일시급수의 경우 일반용 최고 요율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35조 관련) [단위 : 원]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요금		구경별	요 금		
	2019. 11월 고지분부터	2020. 11월 고지분부터		2019. 11월 고지분부터	2020. 11월 고지분부터	2021. 11월 고지분부터
13 mm	1,210	1,240	13 mm	1,310	1,410	1,520
20 mm	3,380	3,460	20 mm	3,640	3,920	4,220
25 mm	5,420	5,560	25 mm	5,830	6,270	6,750
32 mm	9,640	9,880	32 mm	10,370	11,150	11,990
40 mm	16,260	16,670	40 mm	17,480	18,800	20,210
50 mm	24,920	25,540	50 mm	26,790	28,800	30,960
80 mm	69,390	71,130	80 mm	74,600	80,200	86,220
100 mm	103,160	105,740	100 mm	110,900	119,220	128,170
150 mm	224,570	230,190	150 mm	241,420	259,530	279,000
200 mm	319,280	327,260	200 mm	343,230	368,980	396,660
250 mm	430,920	441,700	250 mm	463,240	497,990	535,340
300 mm	518,750	531,720	300 mm	557,660	599,490	644,460
350 mm	642,250	658,340	350 mm	690,420	742,210	797,880
400 mm	710,190	727,940	400 mm	763,460	820,720	882,280
500 mm	913,980	936,840	500 mm	982,530	1,056,220	1,135,440
600 mm	1,482,170	1,519,170	600 mm	1,593,340	1,712,850	1,841,320
800 mm이상	1,655,090	1,696,420	800 mm이상	1,779,230	1,912,680	2,056,140
※ 공동주택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4항을 적용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 2.29>

소관 실 · 과		업 무 과
입 안 자	과 장	황 영 한
	담 당	지 영 근
	담 당 자	이 상 두 (480-4432)